

제23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여수사랑
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3년 12 월 6 일

여 수 시 장

2023.12.06



여수시 조례 제1993호

붙임 여수시 여수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

여수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여수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명 “여수시 여수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”를 “여수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조례는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시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여수사랑상품권”(이하“상품권”이라 한다)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와 관계없이 여수시장(이하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일정한 금액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·판매하는 증표로서, 이를 소지한 사람이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무기명 유가증권과 전자적 형태의 상품권을 말한다.
2. “판매대행점”이란 상품권의 보관·판매·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3호·제4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.
3. “환전대행점”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해주는 자를 말한다.

4. “가맹점”이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서 그 소지자에게 기재된 내용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.
5. “사용자”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.
6. “전통시장”이란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곳을 말한다.
7. “인센티브”란 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적립금 등의 혜택을 말한다.

제1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전통시장상품권 및 지류형 상품권 5천원 권 폐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를 삭제한다.

제2조를 삭제하고, 제3조를 제2조로 한다.

제2조(종전의 제3조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발행된 전통시장 상품권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사용 및 환전이 가능하다.

제3조 중 “여수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용 등과”를 “상품권의 이용활성화와”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여수사랑상품권의 발행)”을 “(상품권의 발행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여수사랑상품권”을 각각 “상품권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시장은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.

제4조제3항 중 “여수사랑상품권”을 “상품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

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여수사랑상품권의 종류는 2종으로 하며, 종류별”을 “상품권의 유형 및”으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여수사랑상품권의 종류와”를 “상품권의 유형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여수상품권 : 5천원,”을 “지류형 :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카드형

3. 모바일형

제5조제1항 중 “여수상품권의 유통지역은여수시 일원”을 “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여수시(이하“시”라 한다) 지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제6조제1항 전단 중 “여수사랑상품권”을 “상품권”으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여수시 홈페이지”를 “시 누리집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전단 중 “금융회사 및 전통시장 상인회 · 단체, 기타 업체로 하여금 여수사랑상품권”을 “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상품권”으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여수시 홈페이지”를 “시 누리집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시장이 인정하는 전통시장 내 노점상은 소속 상인회의 확인을 거쳐서 가맹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.

제8조제2항제1호,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여수시 홈페이지”를 “시 누리집”으로 한다.

- 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」 제2조제1호 · 제3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

3.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 및 유홍주점
4. 정부 정책이나 지침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장
5.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강화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또는 사업장

제9조제1항제1호,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, 같은 호 가목, 나목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여수사랑상품권”을 각각 “상품권”으로 한다.

제10조의 제목 “(판매대행점 준수사항)”을 “(판매대행점의 준수사항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여수사랑상품권의 보관·판매·환전 등의 업무”를 “상품권의 보관·판매 및 환전·정산업무”로, “다해야”를 “다하여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“여수사랑상품권”을 각각 “상품권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중 “비치해야”를 “비치하여야”로, “관리·감독에 협조해야”를 “관리 또는 감독에 협조하여야”로 한다.

제11조의 제목 “(환전대행점 준수사항)”을 “(환전대행점의 준수사항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 중 “여수사랑상품권”을 “상품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제9조 항제1항제2호”를 “제9조제1항제2호”로, “여수사랑상품권”을 “상품권”으로 한다.

제12조의 제목 “(사용자 준수사항)”을 “(사용자의 준수사항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여수사랑상품권”을 각각 “상품권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여수사랑상품권이 훼손되어 여수사랑상품권”을 “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“여수사랑상품권”을 각각 “상품권”으로 한다.

제13조의 제목 “(여수사랑상품권의 환전)”을 “(상품권의 환전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여수사랑상품권”을 각각 “상품권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가맹점의 월간 환전 한도는 월 1천 만원으로 한다. 다만, 가맹점의 매출 증빙 자료에 따라 최대 5천 만원까지 환전할 수 있다.
-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매출실적이 입증되고, 상품권 부정유통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환전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.

제14조의 제목 “(여수사랑상품권의 할인 및 수수료)”를 “(상품권의 할인판매 및 수수료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“여수사랑상품권의”를 “상품권의”로, “여수사랑상품권 권면”을 “상품권 권면”으로, “여수사랑상품권을”을 “상품권을”로 하며, 같은 항 본문의 후단 중 “권면 금액 50만원”을 “50만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범위를”을 “범위 또는 구매한도액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여수사랑상품권”을 “상품권”으로, “판매 금액”을 “판매”로, “통해”를 “통하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여수사랑상품권의”를 “상품권의”로, “여수사랑상품권 판매”를 “상품권의 판매”로 한다.

제15조의 제목 “(여수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)”을 “(상품권의 활성화 지원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여수사랑상품권 유통”을 “상품권의 유통”으로, “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여수사랑상품권”을 “포상금, 시상금 및 수당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품권”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중 “여수사랑상품권”을 각각 “상품

권”으로 한다.

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홍보 및 마케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벤트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, 사용자 또는 가맹점 등에게 경품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.

제16조의 제목 “(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)”을 “(회계장부 등의 비치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여수사랑상품권”을 “상품권”으로, “지정해야”를 “지정하여야”로 한다.

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여수사랑상품권의”를 “상품권의”로, “여수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”를 “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하여”로 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여수사랑상품권”을 “상품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제8조제3항 각 호”를 “제8조제3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신고 건수별로”를 “1회당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여수사랑상품권”을 “상품권”으로 한다.

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“여수사랑상품권”을 각각 “상품권”으로 한다.

제20조의 제목 “(유효기간 경과 여수사랑상품권)”을 “(유효기간 경과 상품권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여수사랑상품권”을 각각 “상품권”으로 한다.

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전통시장상품권

및 지류형 상품권 5천원권 폐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발행된 전통시장 상품권에 대해서는

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사용 및 환전이 가능하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여수시 여수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여수시가 발행하는 여수사랑상품권의 발행·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소상공인·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·발전과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<단서 신설></p>	<p><u>여수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조례는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----- ----- 여수시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----- ----- 기여함--- ----- 다만, 전통시장상품권 및 지류형 상품권 5천원권 폐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삭 제>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여수사랑상품권”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와 관계없이 여수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일정한 금액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·판매하는 증표로서, 이를 소지한 사람이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무기명</p>	

유가증권과 전자적 형태의
상품권을 말한다.

2. “판매대행점”이란 여수사
랑상품권의 보관 · 판매 · 환
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
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
제3호 · 제4호에 따른 금융
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
한다.

3. “환전대행점”이란 시장과
협약을 체결하여 여수사랑
상품권의 환전을 해주는 자
를 말한다.

4. “가맹점”이란 여수사랑상
품권을 사용한 거래에서 그
소지자에게 기재된 내용에
따라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
는 자를 말한다.

5. “사용자”란 여수사랑상품
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
소지한 사람을 말한다.

6. “전통시장”이란 「전통시
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
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
곳을 말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여
수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용
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
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
전에 발행된 전통시장 상품권
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만료
시까지 사용 및 환전이 가능

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여수사랑상품권의 발행)

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여수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.

② 여수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. 다만 시장은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여수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여수사랑상품권을 발행할 때 위·변조와 부정발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유가증권 발행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해야 하며, 구매자의 이용 편리를 위해 카드나 전자상품권을 도입할 수 있다.

④ 여수사랑상품권의 종류는 2종으로 하며, 종류별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수사랑상품권의 종류와 권면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하다.

제4조(상품권의 발행) ① -----

----- 상품권-----
-----.

② 상품권-----

-----.

----- 상품권-----
-----.

③ ----- 상품권-----

----- 상품권-----
-----.

④ 상품권의 유형 및 -----

-----.
----- 상품
권의 유형과 -----
-----.

1. 여수상품권 : 5천원, 1만원,
3만원, 5만원

2. 여수전통시장상품권 : 5천
원, 1만원

<신 설>

제5조(유통지역) ①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여수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여수시 일원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제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여수전통시장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제6호의 전통시장으로 한정한다.

제6조(판매대행점 협약 등) ① 시장은 관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여수사랑상품권의 보관·판매·환전·폐기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은 여수시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7조(환전대행점 협약 등) ① 시장은 관내 금융회사 및 전통시장 상인회·단체, 기타

1. 지류형 : -----

2. 카드형

3. 모바일형

제5조(유통지역) ① -----
-----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여수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지역-----
-----.

<삭 제>

제6조(판매대행점 협약 등) ① -----
----- 상품권-----
-----.
----- 시 누리집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7조(환전대행점 협약 등) ① -----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상품권---

업체로 하여금 여수사랑상품권의 환전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은 여수시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8조(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)

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
자는 업소의 소재지, 업종 등
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신청
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
해야 하며, 등록한 사항을 변
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
다. 다만, 여수시에 등록된 전
통시장 내 업소와 노점상은
가맹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
아도 가맹점 등록이 된 것으
로 본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.

1. · 2. (생략)

3.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 21조제8호 다목 및 라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 영업

시 누리집

② (현행과 같음)

제8조(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)

②

1 · 2 (현행과 같은)

3.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

4. 그 밖에 시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영업 또는 사업장

<신 설>

③ (생 략)

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여수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.

제9조(가맹점의 준수사항)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
1. 여수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
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수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

가.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여수사랑상품권

4. 정부 정책이나 지침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장

5.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강화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또는 사업장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----- 시 누리집-----
-----.

제9조(가맹점의 준수사항) ① -

-.

1. 상품권 -----

2. -----
----- 상품권-----

가. -----
----- 상품권

나. 실제 가맹점 매출액 이상의 여수사랑상품권

② 가맹점은 사용자가 여수사랑상품권 권면 금액 중 100분의 60이상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. 다만, 1만 원권 이하의 여수사랑상품권은 100분의 80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만 한정한다.

제10조(판매대행점 준수사항)

① 판매대행점은 여수사랑상품권의 보관·판매·환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.

② 판매대행점은 여수사랑상품권의 판매량, 재고량, 회수량, 환전액 및 환전잔액 등을 매달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여수사랑상품권 관리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.

③ 판매대행점은 여수사랑상품권 판매 등의 효율적인 관

나. -----
--- 상품권 -----

② ----- 상품권 -----

-. ----- 상품권 -----
-----.
-----.

제10조(판매대행점의 준수사항)

① ----- 상품권의 보관·판매 및 환전·정산업무-----
----- 다하여야 --.

② ----- 상품권 -----

-----.
-----. ----- 상품권 -----

-----.

③ ----- 상품권 -----

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하며, 담당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의 관리·감독에 협조해야 한다.

제11조(환전대행점 준수사항)

① 환전대행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
1. 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여수사랑상품권의 환전을 해 주는 행위

2. 제9조 항 제1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여수사랑상품권의 환전을 해 주는 행위

제12조(사용자 준수사항)

① 사용자는 여수사랑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해야 한다.

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수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.

1. 사용자의 부주의로 여수사랑상품권이 훼손되어 여수사랑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시장이 발행한 것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

----- 비치하여야 -----
----- 관
리 또는 감독에 협조하여야 -----
-----.

제11조(환전대행점의 준수사항)

1. -----
----- 상품권 -----

2. 제9조 제1항 제2호 -----
----- 상품권 -----

제12조(사용자의 준수사항)

① ----- 상품권 -----
----- .

② -----
----- 상품권 -----
----- .

1. ----- 상품권 -----
----- 상품권 -----

2. 사용자가 소지하고 있는 여수사랑상품권이 위·변조 등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인 경우

③ 사용자는 여수사랑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 되며,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해서는 안 된다.

④ 사용자는 여수사랑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.

제13조(여수사랑상품권의 환전) ① 여수사랑상품권의 환전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가맹점 및 환전대행점으로 한정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 이외의 경우에는 여수사랑상품권의 환전이 허용되지 않는다.

③ (생략)

<신설>

2. ----- 상
품권-----

③ ----- 상품권-----

-----.

④ ----- 상품권-----

-----.

제13조(상품권의 환전) ① 상
품권-----

-----.

-----.

② ----- 상품권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가맹점의 월간 환전 한도는 월 1천 만원으로 한다. 다만, 가맹점의 매출 증빙 자료에 따라 최대 5천 만원까지 환전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14조(여수사랑상품권의 할인 및 수수료) ① 시장은 여수사랑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여수사랑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 10의 범위에서 여수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. 이 경우 개인 1명당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은 월 권면 금액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거나 할인 범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.

② 여수사랑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판매 금액 및 환전 금액의 1000분의 20의 범위에서 판매대행점 및 환전 대행점과의 협약을 통해 정할 수 있다.

③ 여수사랑상품권의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금액과 여수사랑상품권판매 및 환전 수수료

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매출실적이 입증되고, 상품권 부정유통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환전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.

제14조(상품권의 할인판매 및 수수료) ① ----- 상품권의

----- 상품권 권면 -----

----- 상품권을 -----

----- . -----

----- 50만원-----

----- . -----

----- . -----

----- . -----

② 상품권-----

----- 판매 -----

----- . -----

----- 통하여 -----.

③ 상품권의 -----

----- 상품권의 판매 -----

----- . -----

는 시장이 보전할 수 있다.

제15조(여수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)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여수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.

② 시장은 여수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나 공무원,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,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여수사랑상품권으로 지급 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수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.

1. · 2. (생략)

3.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여수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16조(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) ① 시장은 여수사랑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

-----.

제15조(상품권의 활성화 지원)

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홍보 및 마케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벤트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, 사용자 또는 가맹점 등에게 경품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.

② ----- 상품권 -----

----- 상품권 -----

----- 상품권 -----

----- 상품권 -----

----- 상품권 -----

제16조(회계장부 등의 비치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) ① -----

----- 상품권 -----

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야 한다.

② · ③ (생 략)

제17조(포상) 시장은 여수사랑상품권의 유통, 가맹점 확대 및 홍보 활동 등 여수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노력한 주민이나 공무원, 관련기관·단체 등에게 「여수시 포상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18조(신고포상금 지급) ① 시장은 여수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하여 신고포상제를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제8조제3항 각 호의 가맹점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가맹점을 신고한 사람 및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. 다만, 신고내용이 위반 사실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못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.

③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 건수별로 10만원을 지급하며, 1명당 연간 지급 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한다.

----- 지정하여야 -----.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포상) ① -- 상품권의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하여 -----.

제18조(신고포상금 지급) ① -- 상품권 -----.

② ----- 제8조제3항 -----.

③ ----- 1회당 -----.

④ 제3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여수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.

제19조(환수 조치) 시장은 판매대행점, 환전대행점,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여수사랑상품권 할인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.

1.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점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여수사랑상품권을 환전한 경우

2. · 3. (생략)

제20조(유효기간 경과 여수사랑상품권) 유효기간 만료 시 까지 환전 청구되지 않은 여수사랑상품권 판매대금은 시로 귀속한다. 다만, 시장은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으나 구매자가 확인된 미유통 여수사랑상품권의 경우에는 구매자의 청구가 있으면 할인한 금액을 제외한 후 환급할 수 있다.

제2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④ ----- 상품권-----.

제19조(환수 조치) -----

----- 상품권

-----.

1. -----

----- 상품권

2. · 3. (현행과 같음)

제20조(유효기간 경과 상품권) -----
----- 상품권 -----
-----.

----- 상품권 -----

-----.

제2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(2020. 1. 7. 조례 제148
0호)